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721
----------	------

2020년 9월 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발 의 자 : 박기재 의원 외 13명
- 나. 발의일자 : 2020년 8월 11일
- 다. 회부일자 : 2020년 8월 21일
- 라. 상정결과 : 제29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문화체육  
관광위원회(2020년 9월 2일, 상정·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박기재 의원)

### 가. 제안이유

-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종합우승한 서울시의 경기력 유지·강화를 위해 경기부의 창단 확대 필요성이 대두됨.
- 이에 실업팀 부재에 따라 매년 전국체전에 미출전하는 종목에 대한 창단요청 수요를 해소하고 동·하계종목의 균형적인 발전 도모를 위해 동계종목 창단수요를 해소하며, 제100회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던 협회 소속팀들의 창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직장운동경기부 경기인 정원을 증원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경기인 정원을 220명에서 245명으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3조제4항)

##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해당 없음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첨부)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경욱)

- 동 개정안은 제100회 전국체육대회(2019년) 종합우승 이후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의 경기력 유지·강화 및 비인기 취약종목 활성화 등을 위해 경기인 정원을 확대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서울특별시 체육복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3조(경기부 설치 등) ④ 경기인 은 총 <u>220명</u> (장애인 경기 종목의 경기인 45명을 포함한다)의 범 위 안에서 각 종목별로 감독 1 명, 코치 1명 및 트레이너 1명을 둘 수 있으며, 각 구성원의 임무 는 다음과 같다.	제3조(경기부 설치 등) ④ ----- --- <u>245명</u> ----- ----- ----- ----- ----- ----- -----.

-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는 서울시 민간위탁사업으로 서울시체육회에서 수탁 운영(2002.1.~2022.12.) 중에 있으며 서울시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는 서울시장애인체육회에서 운영(2010.3.~2022.12.) 하고 있음.

<위탁사무 현황>

위탁명	종모	정원/현원	(現)운영단체	위탁기간
서울특별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상 등 20개종목 22개팀	175명/175명	서울특별시 체육회	'20.1.1~'22.12.31 (7회차, '02년 ~ 수탁)
서울특별시청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휠체어농구 등 5종목 5개팀	45명/33명	서울특별시 장애인체육회	'20.1.1~'22.12.31 (5회차, '10년 ~ 수탁)

※ '20.8월 중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4종목 12명(지도자 3, 선수 9) 선발 예정

- 제100회 전국체전에서 종합우승 이후 서울시의 경기력 유지·강화를 위해 경기부 창단 확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실업팀이 없는 테니스(여자일반부), 정구(여자일반부), 농구(남자일반부), 배구(남자일반부) 등 전국체전에 미출전하는 종목과

제100회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스쿼시(일반부), 세팍타크로(남자일반부) 등 협회 소속팀들의 창단 요청·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하계종목(45개 중 18개, 40%)과 동계종목(9개 중 3개, 30%)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스키(알파인, 스노보드, 크로스컨트리), 빙상(피겨) 등의 창단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음.

현재 조례상 장애인 경기인 45명을 포함하여 총 220명의 범위 안에서 각 종목별로 감독 1명, 코치 1명, 트레이너 1명을 둘 수

있게 되어 있으며 비장애인 경기부는 신규창단을 위해 정원조정이 필요한 상황임.

- 신설팀 창단에 따라 연평균 약13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된 만큼 비용대비 효과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신설팀 창단시 종목별 창단 필요성을 검토하고 운영위원회, 체육진흥관리위원회의 심의와 승인을 거쳐 경기인 선발과 팀 운영이 되고 있으나 경기력이 낮거나 내·외부 잡음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유야무야(有耶無耶)한 종목은 폐지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기재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721
----------	------

발의년월일 : 2020년 8월 11일

발 의 자 : 박기재 의원 (1명)

찬 성 자 : 이영실, 김경영, 김제리, 이성배,  
송명화, 노승재, 김호진, 노식래,  
김춘례, 경만선, 한기영, 송아량,  
오한아 의원(13명)

## 1. 제안이유

-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종합우승한 서울시의 경기력 유지·강화를 위해 경기부의 창단 확대 필요성이 대두됨.
- 이에 실업팀 부재에 따라 매년 전국체전에 미출전하는 종목에 대한 창단요청 수요를 해소하고 동·하계종목의 균형적인 발전 도모를 위해 동계종목 창단수요를 해소하며, 제100회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던 협회 소속팀들의 창단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직장운동경기부 경기인 정원을 증원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경기인 정원을 220명에서 245명으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3조제4항).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첨부)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220명”을 “245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경기부 설치 등) ④ 경기인은 총 <u>220명</u>(장애인 경기 종목의 경기인 45명을 포함한다)의 범위 안에서 각 종목별로 감독 1명, 코치 1명 및 트레이너 1명을 둘 수 있으며, 각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p>	<p>제3조(경기부 설치 등) ④ -----            ----- <u>245명</u>(-----            -----)            -----            -----            -----            -----            -----.</p>

#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요약

###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경기부 설치 등) 제4항 내용 중 경기인의 수를 총 220명(장애인 경기 종목의 경기인 45명을 포함한다)에서 245명으로 조정함으로, 경기인 25명이 증가함에 따라 인건비, 기본경비 및 일반운영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함

### 2. 비용추계의 전제

#### 가. 대상

- 제3조(경기부 설치 등)제4항 내용 중 경기인(비장애인)이 220명에서 245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증간된 25명을 대상으로 추계

#### 나. 전제

- 비용은 2021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 이후에도 비용발생
- 1인당 인건비는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사업의 민간위탁금을 기준으로 선수단 인원수를 적용하여 1인 평균비용 산출  
(※ 1인당 평균비용(인건비 및 운영비) : 85,911천원 = '20년기준 민간위탁금 15,034,362천원 / 인원수 175명)
- 직장운동경기부 신설팀 창단에 따른 경기인 수는 매년 5명씩 충원하는 것으로 전제  
<직장운동경기부 신설팀 창단에 따른 경기인 수 증가(안)>  
- 비장애인 : '21년(5명) → '22년(5명) → '23년(5명) → '24년(5명) → '25년(5명) <총 25명>
- 연간 위탁운영비는 인건비, 운영비로 구성되며 인건비는 경기인 성과에 따라 연도별로 증감이 있어 고정금액 적용 (※ 물가 상승률 등 미반영)

**다. 추계기간** : 시행 후 5년 (※비용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인 비용 발생 예상)

#### 라. 방법

-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의 경기인(비장애인)이 25명 증가함에 따라 인건비, 운영비 등의 비용 증가분을 추계함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 비용 = 6,443,298천원(연평균 1,288,659천원)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2021)	(2022)	(2023)	(2024)	(2025)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경기부 설치 등 (제3조제4항)	429,553	859,106	1,288,660	1,718,213	2,147,766	6,443,298
	소계(b)	429,553	859,106	1,288,660	1,718,213	2,147,766	6,443,298
□ 총 비용(b-a)		429,553	859,106	1,288,660	1,718,213	2,147,766	6,443,298

4. 덧붙이는 의견 : 없음

5.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예산분석팀장      정한섭

분석관(주무관)    양훈

☎ 02-2180-7934

e-mail : huny101@seoul.go.kr

##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1. 비용요소

-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의 경기인 25명 증가(비장애인)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발생

### 2. 세부추계내역

- 경기 종목의 경기인 25명 증가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 6,443,298천원  
(연평균 1,288,659천원)

- 연간 인건비 및 운영비(100%) = '20년도 인건비(76%) + '20년도 운영비(24%)  
(인건비) : 경기 종목의 경기인 25명의 인건비, 법정부담금 등 = 4,896,907천원  
(운영비) : 경기 종목의 경기인 25명의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등 = 1,546,391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연간위탁 운영비	인건비	326,460	652,921	979,382	1,305,842	1,632,302	4,896,907
	운영비	103,093	206,185	309,278	412,371	515,464	1,546,391
합 계		429,553	859,106	1,288,660	1,718,213	2,147,766	6,443,298

- 주1 : 2020년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육성사업 중 서울시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금 기준  
 주2 : 인건비 및 운영비 연간 상승률 미반영  
 자료 :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